

의안번호	2216957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5. 10. 14.
추 계 번호	25B4207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특수번호판을 제작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,500만원(연평균 1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자동차등록번호판(안 제10조)·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(안 제49조) －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특수번호판 제작	85	－	－	－	－	85	17

주: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
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	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(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의3 ¹⁾ 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하며, 이하 “등록번호판”이라 한다)을 붙여야 함. 다만,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·재량 규정
		자동차 소유자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·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여야 함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49조(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)	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(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함(제1항)	의무규정

1)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선민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○○○○○호)

제50조의3(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) ⑥ 시·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·제49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·이륜자동차번호판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(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번호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교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	○	•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	안 제49조(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새롭게 적용할 특수번호판 제작 및 배포 비용이 발생함
 -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유사 사례의 평균 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자동차등록번호판(안 제10조)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(안 제49조)

-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게 될 특수번호판(이하 “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특수번호판”) 제작에 따른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유사 사례의 평균 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추계함
 - － 유사사례로, 국토교통부는 ‘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연구용역’ 및 ‘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’을 실시하였으며, 평균 소요비용은 8,500만원임

[표 2]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개편 관련 유사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수행기관	발주기관	실시년도	사업비
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연구용역	한국교통안전공단 한양대학교 디자인·기술연구소	국토교통부	2017	70
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	한국교통안전공단	국토교통부	2023	100
평 균				85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) 내용 참조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특수번호판을 제작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,500만원(연평균 1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자동차등록번호판(안 제10조)·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(안 제49조)	85	—	—	—	—	85	17
－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특수번호판 제작							

주: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